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1월 10일, 김광성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8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광성 의원)

가. 제안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평창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책 개발·발굴 노력의 준수 책무(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위탁근거(안 제4조)
- 사업추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안 제5조)
- 관련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부.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광성 의원
- 제안일자 : 2025. 11. 10.
- 회부일자 : 2025. 11. 18.
- 상정일자 : 2025. 11. 25.

2. 제안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평창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책 개발·발굴 노력의 준수 책무(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위탁근거(안 제4조)
- 사업추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안 제5조)
- 관련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군수의 책무)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보급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지원 사업)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5조(재정 지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에서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저. (생략)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 허.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략)

3. ~ 7. (생략)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김광성 의원)

의안 번호	505
----------	-----

발의연월일: 2025년 11월 10일

발 의 자 김광성 의원

찬 성 자 박춘희, 김성기, 심현정의원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평창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준수 및 군민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위탁근거(안 제4조)

라. 사업추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안 제5조)

마. 관련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불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10. 27. ~ 11. 3.(의회사무과-4605), 의견없음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평창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약칭: 보호관찰법)

제1조(목적)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20.>

[전문개정 2009. 5. 28.]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및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 5. 2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김광성의원
연락처	(033) 330 -2506